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목적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2.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3. 평가대상

(1) 평가대상 기관

- 아래 표에 제시된 평가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구분	평가대상 훈련
집체 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업자 국기)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등 포함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기업맞춤형훈련, 채용예정자훈련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외국어훈련 포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파트너 훈련기관

구분	평가대상 훈련
원격 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인터넷원격훈련 ※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스마트훈련 및 블렌디드(집체+원격) 과정 포함

*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실시

- 2016년 다년인증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7년 다년인증기관은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다년인증 유지 여부 결정

* 단, 3년인증 기관 중 2018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은 아래의 평가대상 구분에 따라 실적보유기관 또는 신규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함

(2) 평가대상 구분

- 평가대상 기간 내 발생한 주훈련대상 운영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 신규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평가 운영

구분	평가대상 구분 기준
실적 보유 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7.1.1.~2017.12.31.인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집체훈련기관 및 원격훈련기관
신규 기관	○ (상반기) 훈련종료일이 2017.1.1.~2017.12.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하반기) 훈련종료일이 2017.6.1.~2018.5.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단, 2018년 실적보유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실적보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미신청 또는 포기신청)은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3) 평가대상 기간(실적보유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7.1.1.~2017.12.31.인 훈련과정의 운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단,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의 준법성 항목,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및 성과평가)의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은 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름

(1)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 여러 종류의 훈련을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각각의 인증평가 대상기간의 훈련실시 비중을 고려하여 훈련별 지표 점수(40점) 산출**

- ① **실업자 훈련실시비중(%)**: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times 100\%$
- ② **재직자 훈련실시비중(%)**: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 (\text{실업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5 + \text{재직자 평균훈련인원} \times 1)] \times 100\%$
- ③ **평균훈련인원** = $[(\text{A과정 실시인원} \times \text{A과정 훈련시간}) + (\text{B과정 실시인원} \times \text{B과정 훈련시간}) + \dots] / 8\text{시간}$

(2) 집체훈련 신규기관

- 3 -

(3)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1. 성과평가* (60점)	훈련별 지표(45점)	
		실업자 훈련지표	
		1. 취업률	2. 수요자 만족도
		3. 중도탈락률	4. 과정운영실적
		5.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블렌디드과정 개발·운영 실적)	
	재직자 훈련지표		
	1. 수료율	2. 수요자 만족도	
3. 훈련과정등급			
4. 가점(스마트과정 및 블렌디드과정 개발·운영 실적, NCS훈련 개발·운영 실적)			
공통 지표(15점)			
	1. 개설률	2.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2. 현장평가 (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훈련인프라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원격훈련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현장평가* (100점)	1. 기관경영 3. 훈련인프라 5. 훈련생 관리	2. 훈련과정 관리 4. 훈련전담인력

* 현장평가 시 원격훈련 과정인정 요건(운영인력 포함) 평가 반영

5. 인증평가 방법

구분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2단계 역량평가		
		성과평가		현장평가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대상	평가대상 전체 기관	1단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HRD-Net 훈련생 수강평 또는 전화 등 설문조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훈련기관의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평가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건당 10점 감점
-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검찰 송치일, 제재 처분일 또는 과태료 부과일이 2017.1.1.~2017.12.31.인 경우에 평가에 반영됨(훈련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관계없음)

** 단,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은 처분의 유효기간이 2017.1.1.~2017.12.3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됨

*** 행정소송 및 심판 등의 본안판결을 통해 제재 처분 소송이 완료되는 경우, 본안 판결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2019년부터는 제재 처분 이력 등 준법성 평가는 직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임

○ (재정건전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법인사업자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대해 서면평가

* 세금체납 및 신용수준은 2018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 국세 및 지방세 세금체납 여부: 세금체납 중이거나,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각 10점 감점

* 세금체납 여부에 대한 평가는 납세증명서만 인정함

- 신용수준: 완전자본잠식 10점 감점, 신용등급에 따라 5~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2019년부터는 신용수준 9~10등급(개인), 완전자본잠식(법인) 기관은 평가 참여를 제한할 예정임

(2) 2단계 역량평가

가. 성과평가(실적보유기관에 한함)

□ 집계실적보유기관(60점)

실업자훈련 지표(40점)

=취업률*(25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가점(3점)

* 취업률(25점)=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일반취업률) 훈련수료자 중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7.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등록(상담기준)한 훈련생 제외,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2018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자는 취업률 산정 시 제외

※ 2019년부터는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할 예정임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

-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으로 적용(단, 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② 취약계층의 취업패 유형은 취업자 1명을 1.5명으로,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1.2명으로 적용(중복 제외)
- 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미만	400명~ 600명미만	600명~ 800명미만	800명~ 1,000명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가중치 부여 없이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매월말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

*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016.1.1.~2017.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등록(상담기준),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수료생(고3 재학생 남자) 제외,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부여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균 훈련 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 시 마다 0.5점씩 감점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가점)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

재직자훈련 지표(40점) =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

* 수요자만족도(20점)=훈련생만족도(10점)+기업체만족도(10점)

-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단, 평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의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료생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시 수요자만족도 점수 0점 부여

※ 훈련생만족도는 2019년부터 HRD-Net 등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전면 적용할 예정임

공통훈련 지표(20점)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10점)+개설률(10점)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훈련이수자평가 실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산출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등급별 점수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시
10점	7점	5점	2점

* 산정기간: 2017년 1~12차 훈련이수자 평가대상 훈련과정 전체, 2018년 1~5차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훈련기관은 전체 훈련이수자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2019년부터는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기관은 성취도평가(가칭)를 실시할 예정임

※ 2019년부터는 전년도 훈련이수자평가 결과(2018년 1~12차)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

- (개설률) 승인된 훈련과정* 중 개설한 훈련과정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반납 신청한 훈련과정 및 유효기간연장심사로 승인된 훈련과정 포함

** 산정기간: 훈련과정 신청일 기준 2016.1.1.~2016.12.31. 승인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2019년부터는 개설률 평가 시 모집률이나 모집인원을 고려할 예정임

□ 원격실적보유기관

실업자훈련 지표(45점)

=취업률*(25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과정운영실적(5점)+가점(5점)

* 취업률(25점)=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20%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과정운영실적)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 과정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가점) ①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부여, ②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재직자훈련 지표(45점)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훈련과정등급(5점)+가점(5점)

* 수요자만족도(20점)=훈련생만족도(10점)+기업체만족도(10점)

-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요자 만족도)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훈련과정등급) 평가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가점) ①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 ②NCS과정 개발·운영실적 비율, ③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공통훈련 지표(15점) = 자동모니터링시스템연계적정성(5점)+개설률(10점)

-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수강 및 수료 건 수 일치율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 2019년부터는 수료 정보 전송률, 캡차 정보 전송률 등의 지표를 적용할 예정임
- **(개설률)** 승인된 훈련과정(심사발급코드 기준) 중 개설한 훈련과정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부여
 - * 산정기간: 신청일 기준 2016.1.1.~2016.12.31. 승인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나. 현장평가

- **(사전 서면평가)** 훈련기관이 현장평가 항목에 부합하는 기관운영 체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사전 서면평가 실시
 -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하며,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평가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 단, 2017년 실적보유기관으로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1년인증 등급을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를 선택한 경우 2017년 현장평가 점수와 2018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인증등급 조정
 - * 2017년 평가 시 2016년 현장평가 점수 환산을 선택한 기관과 2017년 신규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은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선택 불가)
 - ** 현장평가 참여 또는 미참여에 대한 선택은 평가신청 단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정 불가
 - ※ 2019년부터는 부정출결 관련하여 개선된 출결관리시스템(비콘 등) 도입·활용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간 등은 조정 가능
-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 현장평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고용센터 직원 등의 현장평가 모니터링이 병행될 수 있음

6. 평가결과 판정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항목의 감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 기관건전성평가 총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어, 이후 2단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
 -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되거나 직전 **2년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 **다년인증(3년·5년)기관**에서 제외

(2) 2단계 역량평가

가. 실적보유기관

- '1. 성과평가', '2. 현장평가' 영역의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로 평가결과 판정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85% 이상 득점	5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 *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2019년부터는 등급을 부여하는 역량평가 기준이 상향될 예정임

인증등급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5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5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3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3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9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9년도 인증평가 신청 가능

*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평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현장평가 미참여를 선택 후, 전년도 현장평가 점수와 당해 연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인증등급이 조정된 경우, 현장평가 참여 연도로부터 유효기간 발생

○ **다년인증기관의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 및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등급 확정**

○ 다년인증기관은 1년 단위로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받은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건전성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여부 결정

* 자율점검보고서는 매년 인증평가신청 마감일까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의 평가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인증취소(인증유예)될 수 있음

- 다년인증기관 모니터링 결과 ①기관건전성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감점요인(완전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경우, ②훈련성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등급 하향 조정 또는 인증취소

< 훈련성과 미달 판단기준 >

실업자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
- 취업률 8등급 중 6등급 이하이거나 2년 연속 5등급 이하일 경우 ※ 일반취업률,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을 각각 적용	- 수료율 7등급 중 5등급 이하이거나 2년 연속 4등급 이하(2017년 수료율 3등급 이하에 해당)일 경우 - 수요자 만족도가 전체 평균의 80% 미만 이거나 2년 연속 평균 미만일 경우

* 2016년도 선정 다년인증기관은 2018년도 훈련성과 모니터링 기준으로 평가하고, 2017년도 선정 다년인증기관은 2019년도 훈련성과 모니터링 기준으로 평가하여 인증등급 유지 여부 결정

** 여러 종류의 훈련을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실업자 및 재직자훈련의 모니터링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1개 이상 미달 시 인증등급 하향 조정 또는 인증취소함

나. 신규기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평가결과 판정

* 원격훈련기관은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충족/미충족 여부)을 포함하여 평가

- 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정부지원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신규기관 인증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인증등급	신규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9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8년도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 가능

*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평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 인증등급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반영

*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관은 훈련과정심사 신청 제한(집체 및 원격훈련기관 동일 적용).

** 인증평가 신청 기관이 통합심사 신청기간 개시 전에 인증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사 신청은 허용하고, 추후 확정되는 인증등급을 통합심사 결과 확정 시 반영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이 인증유예 등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은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부적합 판정(원격훈련 신규기관은 인증평가 등급 확정 전 과정심사 신청 불가)

○ HRD-Net을 통해 인증평가 등급 및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다년인증등급(3년·5년) 획득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 우수훈련기관 우대혜택 >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유효기간) 최우수훈련기관 과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우수훈련기관 과정 유효기간 최대 3년 부여 * 단, 해당기간은 훈련기관의 인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혜택) 시설장비 대부 이자율 우대, 훈련비 정산부담 완화 등	
(과정심사) 실업자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 심사 시 물량 우선 배정 * 통합심사 신청 시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물량 우선 배정 (회차제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직종 평균 취업률 이상일 경우 회차 제한 미적용 * 2019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정부터 적용되며, 직종취업률은 통합심사 시 적용되는 취업률에 따름 (훈련상담 우대) 훈련상담 시 우수훈련기관 과정 우선 추천 및 우수훈련기관에서 상담 실시 후 수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계좌발급 (취약계층 훈련) 우수훈련기관이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 중장년 훈련생 등을 40%이상 편성하여 과정을 운영할 경우 회차 제한 없이 개설 허용	(과정심사) 스마트훈련과정 및 유효기간 자동연장 심사 시 우대 * 스마트훈련: 스마트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 시 가점항목 반영 *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존 원격훈련 과정심사 유효기간을 준용하되, 우수훈련기관 적합과정 중 '전년도 평균 수료율 이상' 과정은 유효기간 자동연장 1년 추가(유효기간 최대 3년 부여)

○ 우수훈련기관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기준 >

○ 자율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인증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5·3년→1년)
○ 훈련기관 인증평가 모니터링 결과, 기관건전성평가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감점요인이 발생한 경우 *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 훈련성과 모니터링 시 훈련성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인증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 우수훈련기관 선정연도 기준 차차년도 인증평가 시 성과 모니터링 실시 예정
○ 직전 1년(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7.12.31.) 동안 훈련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 * 차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평가대상기간과 동일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8. 인증평가 일정(안)

- 인증평가 신청 기관이 통합심사 신청기간 개시 전에 인증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통합심사 신청은 허용하고, 추후 확정되는 인증등급을 통합심사 결과 확정 시 반영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이 인증유예 등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은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부적합 판정 (신규기관은 인증평가 등급 확정 전 과정심사 신청 불가)

(1) 실적보유기관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평가 계획 공고	○ 2018년도 평가기준 및 일정 공고	2월중순
2. 훈련기관 설명회	○ 주요 권역별 훈련기관 대상 설명회 실시	2월말 ~ 3월초
3. 평가신청 및 서류 접수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 평가서류 온라인 제출(HRD-Net 심사평가시스템)	3월초 ~ 3월중순
4.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온라인 통보	4월초
5. 현장평가 일정 안내 및 평가 실시	○ 기관건전성평가 적합 기관에 대해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일정 온라인 통보* ○ 훈련기관별 현장평가 실시	4월중순 ~ 7월말
6. 평가결과 통보	○ 5년인증/3년인증/1년인증/인증유예 등 평가결과 온라인 통보	8월말
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인증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온라인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8월말 ~ 9월말
8. 평가결과 확정	○ HRD-Net 인증평가 결과 게시	9월말

* 상기 일정은 2018년도 평가 운영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2주 전까지 안내 예정

(2) 신규기관

구분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 평가 계획 공고	2월 중순	
2. 훈련기관 설명회	2월 말 ~ 3월 초	
3. 평가신청 및 서류 접수*	3월 초 ~ 3월 중순	7월 중순 ~ 7월 말
4.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4월 중순	8월 말
5. 현장평가 일정 안내 및 평가 실시**	4월 중순 ~ 5월 중순	8월 말 ~ 11월 초
6. 평가결과 통보	5월 말	11월 중순
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5월 말 ~ 6월 초	11월 중순 ~ 11월 말
8. 평가결과 확정	6월 중순	12월 초

* 신규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인증평가 실시

** 상기 일정은 2018년도 평가 운영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1주 전까지 안내 예정

9. 인증평가 실시 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0. 담당자 연락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044-202-7311, 044-202-7312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 전화번호: 1644-5113(내선 1번), 02-6943-4010
 - 팩스번호: 02-6943-4025

[붙임1]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 평가 (100점 만점)	성과 평가 (60점)	훈련 별 지 표 (40 점)	실 업 자	1. 취업률(25점)	• 일반취업률(15점)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7.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취업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5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					
				2. 수요자만족도(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중도탈락률(5점)	• 평균 훈련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산출식: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4. 가점(3점)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월평균보수액 기준									
			재 직 자	1. 수료율(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 단, 40시간 이상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의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2. 수요자만족도(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공통 지표 (20점)	1.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10점)	• 훈련이수자평가 평가대상 과정(NCS 소분류)별로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대상 과정수로 나누어 점수 부여									
					<table><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미실시</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2점</td></tr></table> ※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 + (B등급 과정수×7) + (C등급 과정수×5) + (D등급·미실시 과정수×2)]÷('17년(1차~12차) 훈련이수자 평가대상 과정 전체+'18년(1차~5차)훈련이수자평가 참여과정수) ※ 2017년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훈련기관은 전체 훈련이수자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부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미실시	10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미실시									
		10점	7점	5점	2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현장 평가 (40점)			2. 개설률(10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6.1.1.~2016.12.31.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 개설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1. 기관경영(6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10점)		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③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10점)		① 훈련운영을 위한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훈련생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③ 훈련생과 수료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 인 사 업 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 인 사 업 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증: 60점 이상 • 인증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④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이 있는가? ② 훈련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붙임2]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 인 사업 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 인 사업 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 평가 (100점 만점)	성과 평가 (60점)	실 업 자 훈 련 (60점)	1. 취업률(25점)	• 일반취업률(15점)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7.1.1.~2017.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취업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10점)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8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 부여 (훈련종료일 기준 2016.1.1.~2017.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방법: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들의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성과산출시점(2018년 6월말)까지 매월말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 ※ 취업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5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
			2. 수요자만족도(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중도탈락률(5점)	• 중도탈락률 20%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산출식: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4. 과정운영실적(5점)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산출식: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5.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 수강건수 일치율(2.5점): 수강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강건수 일치율(%): (LOMS 수강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HRD-Net 수강건수)×100%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6. 개설률(10점)	• 승인과정(심사발급코드기준)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6.1.1.-2016.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 개설률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7. 가점(5점)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3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월평균보수액 기준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재 직 자 훈 련 (60점)	1. 수료율(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2. 수요자만족도(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 근로자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훈련과정등급(5점)		• 평가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산출식: (A등급 과정수×5점) + (B등급 과정수×3점) + (C등급 과정수×1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4.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 수강건수 일치율(2.5점): 수강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강건수 일치율(%): (LOMS 수강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HRD-Net 수강건수)×100%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 개설률(10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6.1.1.-2016.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6. 가점(5점)		• 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NCS훈련 개발·운영실적 비율(1점)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NCS 훈련 개발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7년도 승인된 과정수) × 100% ※ NCS 훈련 운영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7년도 운영한 과정수) × 100%	
	현 장 평 가 (40점)	1. 기관경영(6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3. 훈련인프라(10점)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1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 인 사 업 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 인 사 업 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증: 60점 이상 • 인증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3. 훈련인프라(20점)	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관리시스템(LMS)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2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역량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